
[2018~2022]

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

2017. 12.



농림축산식품부
종자생명산업과

목 차

I. 육성 계획 개요	1
1. 수립 배경	2
2. 추진 경과	2
II. 도시농업의 국내외 현황	3
1. 국내 현황	4
2. 해외 현황	7
III. 도시농업 육성 기본 방향	8
1.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 및 평가	9
2. 제2차 종합계획 추진 방향	13
IV. 주요 추진 과제	15
1. 네트워크 강화 및 교류 활성화	16
2. 영역확장형 신서비스 창출	19
3. 미래형 융복합모델 개발 및 보급	22
4. 도시농업 활성화기반 조성	25
V. 단계별 추진계획	29
VI. 중장기 투자계획(안)	30
VII. 계획 추진 및 평가체계	31
※참고 1. 해외도시농업 현황	32

I. 육성계획 개요

1. 수립 배경

-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매 5년마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(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)을 수립토록 규정(제5조)
 - * 제1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 : 2013년 ~ 2017년
-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, 육성 방향 및 목표, 단계별 추진방안
-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육성, 연구개발 및 보급,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등 도시농업 육성·지원 방안 및 중장기 투자계획
- 1차 계획을 점검·평가하고, 최근 여건 및 전망 분석을 통해 향후 5년간의 도시농업 육성 기본방향 정립 필요

2. 추진 경과

- ('17.8.28) 제2차 5개년계획 수립 추진계획(안) 부내 방침 확정
- ('17.9.5) 제2차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T/F 출범회의 개최
- ('17.9.21) 제2차 민·관합동 도시농업워크숍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
- ('17.10.19)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한 종합계획 수정·보완
- ('17.12.19) 부내 정책조정협의회 제2차 5개년계획(안) 상정
 - 협의사항 검토 및 적정의견 수렴 후 종합계획(안) 반영
- ('17.12.20) 종합계획안 안건 심의를 위한 도시농업협의회 개최
 - 심의결과에 따른 계획안 의결 및 제언사항 종합계획(안) 반영
- ('17.12.29) 제2차 도시농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·시달

Ⅱ. 도시농업의 국내·외 현황

1. 국내 현황

1 | 일반 현황

- 급격한 도시화와 더불어 도시민들의 취미·여가 활동으로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 증가 추세

◇ **도시농업의 정의** : 도시지역 내 토지, 건축물 등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**취미, 여가, 학습, 또는 체험** 등의 목적으로 농작물, 수목 및 화초를 재배하거나 곤충을 사육(양봉포함)하는 행위(도시농업법 제2조)

- 특히 도시농업 정의가 확대*(17.9.22시행)됨에 따라 단순 농작물 경작·재배의 개념을 벗어난 도시농업 참여 확대 전망

* (기존) 농작물 경작·재배 → (확대) + 수목·화초재배, 곤충사육·양봉

< 최근 6년간 도시농업 참여자 수 및 텃밭면적 현황 >



< 현황 요약('16년 기준) >

- ▷ 도시텃밭면적: : ('10년) 104ha → ('16년) 1,001 (9.6배 증가)
- ▷ 도시농업 참여자 수: ('10년) 153천명 → ('16년) 1,599 (10.5배 증가)

- 도시농업 참여형태는 도시농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5개로 세분화되며,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음(전체대비 43.3%)

< 유형별 도시농업 현황 >

(단위 : 천명, %, 개소, ha)

구 분	합계	주택 활용형	근린 생활권형	도심형	농장형· 공원형	학교 교육형	기타형
참여자 수	1,599	270	337	34	166	693	99
(참여비율)	100	16.9	21.0	2.2	10.4	43.3	6.2
텃밭 수	101,689	83,111	3,768	1,074	301	4,150	9,285
텃밭면적	1,001	107	430	8	192	99	165

- 도시민들의 도시농업 활동을 지도·교육하기 위한 “도시농업 지원센터” 및 “전문인력 양성기관” 매년 증가 추세

< 도시농업 관련 교육기관 지정 현황 >

- ◆ 도시농업지원센터* : (‘12) 1개소 → (‘13) 3 → (‘14) 12 → (‘15) 15 → (‘16) 19
- ◆ 전문인력양성기관** : (‘12) 2개소 → (‘13) 5 → (‘14) 21 → (‘15) 25 → (‘16) 30

* 도시농업법 제10조에 따라 지정,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사요령교육 수행

** 도시농업법 제11조에 따라 지정,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

- 민간분야에서는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활동을 위한 도시농업연구회 및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

< 기관별 도시농업공동체 및 도시농업연구회 현황(‘16년 기준) >

(단위 : 개)

구 분	계	농진청	서울	부산	대구	인천	대전	세종	경기	충청	전라	경상
도시농업연구회	37	1	2	5	1	-	2	1	10	5	5	5
도시농업공동체	246	-	9	42	1	1	-	-	188	-	3	2

- 도시민들의 도시농업 실천공간인 공영도시농업농장, 민영 도시농업농장 및 도시농업공원 또한 점차 확대 추세
 - 법률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주말농장, 근교농원 등을 포함할 경우 그 수치는 더 증가할 전망

< 도시농업농장 및 도시농업공원 현황('16년 기준) >

(단위 : 개소, m², 명)

구분	설치근거	개소수	면적	참여자 수
합계		135	587,318	62,754
공영도시농업농장	도시농업육성법 제14조제1항	53	306,962	28,232
민영도시농업농장	도시농업육성법 제17조제1항	75	176,912	12,133
도시농업공원	공원녹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바목	7	103,444	22,389

2 | 법·제도 현황

-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『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및 하위법령 제정 및 시행('12.5.23)
 - 도시농업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『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』 고시*
 - *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-35, 2015.6.8 일부개정
 -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의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『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』을 수립하고 있으며,
 - 수립된 5개년 계획을 토대로 2014년부터 매년 시행계획 수립
-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률에 근거한 자체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도시농업 활성화를 뒷받침

< 지자체 조례제정 현황(누계) >

(단위 : 개소)

구 분	'11년	'14년	'15년 (A)	'16년 (B)	증감 (B-A)	(B-A)/A
합 계	21	76	85	91	6	11.9%
광역자치단체	4 (서울·광주·대구·대전)	9 (부산·인천·울산·세종·경기)	9 (-)	10 (전북)	1	10.0
기초자치단체	17 (서울·충청·성북구 등)	67 (안성, 청주, 전주, 여수 등)	76 (서울 관악구, 대구 북구 등)	81 (인천 남구, 목포, 여주 등)	5	6.2

◆ 연도별 현황 : ('10) 9 → ('11) 21 → ('12) 41 → ('13) 65 → ('14) 76 → ('15) 85 → ('16) 91

□ 도시농업을 소재로 하는 국가전문자격제 도입('17.9.22)

- 도시농업 관련 해설, 교육, 지도 및 기술보급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전문자격(명칭 : 도시농업관리사) 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

2. 해외 현황

□ 선진국을 중심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공간으로 소규모 도시텃밭, 도시농장(City farm) 등이 확대

- 미국 커뮤니티가든, 일본의 시민농원, 영국 얼로트먼트, 독일 클라인 가르텐, 러시아 다차 등

□ 일본, EU 등 주요 선진국은 도시농업 관련 법 제정 등 제도화를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 도모

- 영국은 '얼로트먼트법'(1890년), 독일은 '클라인가르텐법'(1961년), 일본은 '시민농원정비촉진법(1990년) 및 도시농업진흥기본법(2015년)'을 제정하여 정책적으로 도시농업 지원

□ 최근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부각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도시민 참여로 그 영역 및 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추세

- 기존의 생산 농업, 체험 교육 등 1차적 기능에서 도농교류, 공동체 형성, 정서순화,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 문화, 환경적 영역까지 확장

Ⅲ. 도시농업 육성 기본 방향

1.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 및 평가

1 성과목표 및 평가 요약

- (목표) '17년까지 도시농업 참여만족도 개선 및 수요층 다변화 추진으로 도시텃밭 면적 1,500ha 및 도시농업 참여자수 2,000천명 확보
 - 텃밭면적 : 564ha('13) → 1,200(잠정, '17) 213% 증가, 목표대비 80%
 - '13년(1년차)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목표는 20% 미달
 - (원인) 도시텃밭 공간 확충 한계 및 1인당 면적 소형화 추세
 - (대책) 옥상, 베란다, 실내외 벽면 등 도시텃밭 공간 다양화
 - 참여자수 : 885천명('13) → 2,000(잠정, '17) 226% 증가, 목표대비 100%
 - '13년(1년차)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목표 달성

2 그간의 성과

가 기반 조성

-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
 -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제정 시행('12.5.22)
 -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시('15.12.4)이후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·확충을 통한 고도화 관리
 - 농식품부, 서울시, 부산시 등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국적인 도시농업 박람회 18회 개최('16년말 기준)

나 양적 성장

- 도시농업단체 주도의 시민운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·지자체의 제도마련을 통해 도시농업 참여자 및 텃밭면적이 꾸준히 확대
 - '16년말 기준, 참여자 및 텃밭면적은 모두 '13년 대비 1.8배 증가
 - * 참여자수: ('13) 885천명 →('14) 1,084 →('16) 1,599, 텃밭 면적: ('13) 564ha →('14) 668 →('16) 1,001

다 사업지원 및 기술보급

- (사업지원) 텃밭 보급 등을 통한 도시농업 체험공간 확대 지원
 - 학교텃밭 조성 및 농자재 구입 등 팜스쿨 사업지원(농식품부, '13~14, 3.8억원)
 - 농식품부와 91개 지자체(특·광역시 포함)에서 주말농장, 도시농업 공원 등 체험공간 조성·지원('16. 약 320억원)
- (기술보급) 도시농업 모델 및 관련기술 개발·보급 지원
 - 도시녹화, 경관조성 등 도시농업 기반기술 개발·보급(농촌진흥청)
 - 옥상, 벽면 등 인공지반 녹화 식물소재 110종 선발('14년 누계)
 - 텃밭용 채소 선발, 친환경 병해충 방제 등 현장적용 기술 개발
 - 도시텃밭 친환경 재배기술 등 현장 활용기술 보급(농업기술센터)

라 인력양성

-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
 -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·운영지원('16. 31개소)으로 전문인력 825명 배출
 - 원예활동지도사 및 마스터가드너 양성을 위한 정규 교육과정 구축·운영(농촌진흥청, 농업기술원, 농업기술센터)

3

반성(미흡한 점)

- 도시농업 참여자와 일반농업인 간 『도농상생』 공감대 부족
 - 도시농업과 일반농업의 생산활동이 경합된다는 부정적인 인식 상존
 - 귀농·귀촌, 농산물 직거래, 농산물 소비촉진 등 도시농업을 통해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발굴·확산 필요
- 민·관간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도시농업 단체의 규모화 미흡
 - 민·관간 효율적인 협업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소통활성화 필요
 - 도시농업단체가 전국 단위조직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, 한농연,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단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
- 관계부처·민간과 협업을 통해 개발된 실천모델의 정착방안 미흡
 - 어린이 인성함양용 ‘학교텃밭’, 실버세대·사회복지시설 등 배려계층 대상 ‘복지텃밭’ 등 사회전반으로 도시농업 확산 도모 필요
 - ‘꿈틀어린이텃밭학교’, ‘국회 생생텃밭’ 등 다년도에 걸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사업모델에 대한 시스템화 필요
- 연구개발(R&D)성과의 현장 체감형 사업화 노력 미흡
 - 민간부문에 대한 R&D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체계 미흡
 - R&D 성과를 건축·건강·교육 등과 접목하여 새로운 서비스 창출 필요

- 도시농업은 다양한 분야의 순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수단으로 주목
 - 미래세대 인성함양,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등 도시농업의 정서 순화 기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
 - 도시농업공원 확대, 도시환경 정비 등 문화·환경 부문까지 영역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 예상
- 전면적인 시장개방, 농촌 노동력 감소 등 농업·농촌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농업인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추진 필요
 - 전 국민의 90%가 넘는 도시민 대상 도농상생 공감대 형성 필요
-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타산업 활용 융복합 도시농업 서비스 요구 증가
 - 생애주기별, 계층별 수요자 맞춤형 모델 연구개발 확대 및 관련 서비스 발굴 필요
 - 도시농업의 범주 확대에 따라 다양한 분야를 활용한 융복합형 도시농업 모델 개발 필요성 대두
- 세계적으로 중요한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대기오염,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농업 역할 확대 전망
 - 다양한 센싱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도시지역의 식물 케어 시스템 구축 등 도시농업관련 사업 유망
 - 환경생태 보전 역할에 대한 기대감 증가로 도시 생태계 재생운동이 확산될 전망(도시농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, KREI 2015)

2. 제2차 종합계획 추진 방향

□ 비전 및 목표

비전 (VISION)	“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” 구현 =도시농업을 통한 도농상생의 틀 구축=
-----------------------	--

목 표 [’22]	도농상생사업 기반 구축	융복합 서비스 창출	도시텃밭 면적 2,000ha	도시농업 참여 4,000천명
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4대 핵심 과제	1. 네트워크 강화 및 교류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도시농업상담센터 설치·운영 ② 도·농간 교류활동 강화 ③ 민·관 협의체 구성·운영
	2. 영역확장형 신서비스 창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미래세대 텃밭교육 체계화 ② 복지형 도시농업서비스체계 구축 ③ 문화융합형 도시농업사업 발굴
	3. 미래형 융복합모델 개발 및 보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4차산업 대응 미래도시농업사업 발굴 ② 도시농업 활용기술 보급·확산 ③ 도시녹화 표준모델 및 기반기술 개발
	4.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 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법·자격제도 정비 ② 도시농업 교육 활성화 ③ 정보화 서비스 확대 ④ 홍보채널 다양화

□ 제1차 종합계획 vs 제2차 종합계획

분 야	제1차('13~'17)	제2차('18~'22)
① 법적정의	(개념) 농작물 경작·재배 (공간) 도시지역	+ 수목, 화초, 곤충(양봉) + 관리지역
② 정책목표	도시농업육성	+ 도농상생 틀 구축
③ 정책대상	도 시 민	+ 농업인
④ 정책범위	도시농업활동	+ 환경·문화·건강·복지 등과 접목, 융복합서비스 창출

◆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·농촌의 활력증진 동시 도모

IV. 주요 추진 과제

1. 네트워크 강화 및 교류 활성화

1 | 현황 및 문제점

- 농식품부, 지자체, 민간단체 간 체계적 거버넌스 부족
 - 주요 중점현안에 대한 민·관간 체계적 도시농업 업무 협업을 위한 중앙단위 민관협의체 마련 요구

- 도시농업단체와 농업인단체 간의 지속적인 소통채널 미비
 - 인적교류 및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도농연계 프로그램 부재
 - 도시농업과 일반농업 간 생산경합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상생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 역량 미흡

- 도시농업인 간 관련 정보의 체계적 공유 및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중요성 제기
 - 도시농업인 간 소통 활성화 및 도시농업 종합상담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농업 통합 상담 시스템 부재

2 | 세부 추진계획

【 추진 방향 】

- ◆ 도시농업상담센터 운영 및 민·관 협의체 구성
- ◆ 도·농간 교류확대 및 상생사업 확대

가 도시농업상담센터 설치·운영

- 도시농업 및 귀농·귀촌에 대한 종합상담이 가능한 도시농업 종합상담센터 설치
 -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 설치(18)
 - 도시농업관리사자격 취득, 교육기관 정보, 도시농업공동체 등록, 도시텃밭 분양정보, 각종 지원 사업 안내 등 현장방문 및 전화 민원 상담
- 도시농업 확산 우수사례 포상을 통한 사업모델 발굴
 - 도시농업과 귀농·귀촌 연계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·표창 확대 및 현장 견학지로 활용함으로써 사업모델의 적극 발굴 유도

나 도·농간 교류활동 강화

- 도·농간 인적교류 활성화
 - “공동텃밭 농산물직거래장터” 운영(월 1~2회)으로 도시농업인과 농업인과의 생산물거래 공간 마련
 - * 설치계획 : ('18) 10개소 → ('19p) 20 → ('20p) 30 → ('22p) 50
 - 도시농업단체와 농업인단체의 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기술교류, 팜파티, 정보공유, 생산물직거래 등 상생사업 확산* 유도
 - * 지역 농업인단체와 도시농업인 단체가 공동으로 “농산물 소비촉진 운동” 전개 등
 - 농촌지역 교류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테마공원, 산림휴양지, 식물원 등과 연계한 도시민 대상의 체험프로그램 적극 활용
 - 도시농업 관계자 및 기관과 지역 체험 마을 간의 결연확대 및 온라인 사이트 개설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

다 민·관 협의체 구성·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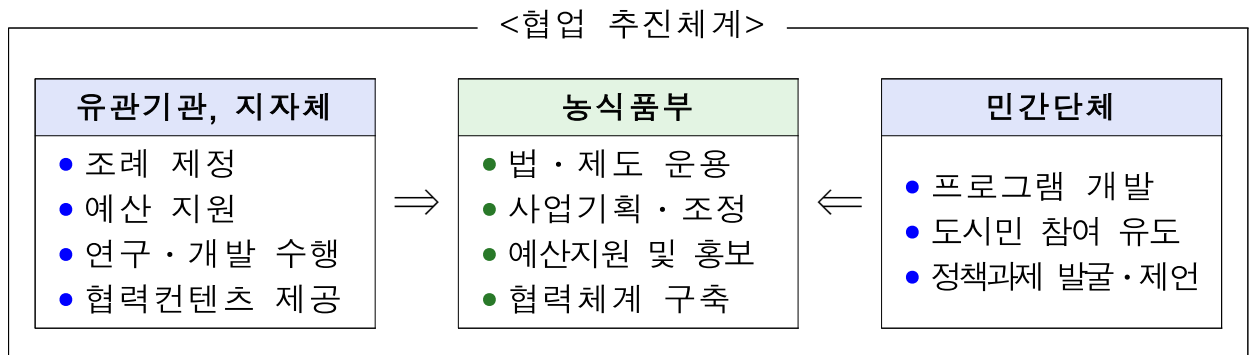
□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와의 협업 파트너십 강화

- 농식품부, 지자체, 민간단체, 학계 등이 모여 체계적인 도시농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『중앙단위 민·관협의체』 구성⁽¹⁹⁾

< 중앙단위 민·관협의체 구성(안) >

- ① 위원장 : 농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
- ② 간 사 :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, 도시농업단체 대표 1인 등
- ③ 위 원 : 농식품부, 농진청, 지자체 담당관 및 도시농업단체, 학계 등 민간전문가
- ④ 주요기능 : 도시농업의 발전방안 제안 및 검토·협의, 주요 현안사항 검토회의,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방안 추진 논의 등

- 민·관간 업무협업 추진체계



- 정기협의회(연2회) 및 임시협의회(중요 현안사항) 개최

□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한 도시농업 사업 발굴

< 부처간 협업모델(안) >

- ☞ 교육부 : 어린이·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“학교텃밭” 설치 확대
- ☞ 복지부 : 실버세대 및 배려계층 대상 “복지텃밭” 설치 확대
- ☞ 국토부 :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지 활용, 도시농업공원 설치 확대
- ☞ 산림청 : “도시숲”과 “먹거리숲”을 활용한 가족단위 여가활동 증진

2. 영역 확장형 신서비스 창출

1 현황 및 문제점

-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및 순기능에 대한 대국민 인식 미비
 - 정서순화, 건강증진, 취미·여가활성화, 지역공동체 회복 등 텃밭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순기능에 대한 홍보 부족
 - 사회문화, 환경생태, 산업경제 분야 등과 결부된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인식 미비
- 타 분야와의 융·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미흡
 -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수준이 단순 취미·여가만을 위한 활동으로 국한되어 건강·복지 등 새로운 가치창출 미비
 - 도시농업의 영역확장을 위한 문화·예술·건축 분야와의 융복합 및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적 기반 부족
 -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농사체험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농업·농촌가치 확산을 위한 도시농업의 역할론 대두
 - 어린이들의 농사체험을 위한 교육운영여건 마련 요구

2 세부 추진계획

【 추진 방향 】

- ◆ 도시농업의 순기능 확산을 위한 신규모델 개발·보급
- ◆ 타 산업 융합형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도시농업 영역 확대

가 미래세대 텃밭교육 체계화

- 지자체장이 교장되는 『꿈틀어린이 텃밭학교』 프로그램 성과 확산 유도
 - 도시농업관리사를 꿈틀학교의 텃밭관리 인력으로 파견·지원
 - 텃밭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텃밭조성 및 관리, 꿈틀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용 지침 등 표준 매뉴얼 2종 제작 및 배포(19)
- 전국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대상 학교텃밭 운영 지원
 -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 유휴지를 활용하여 텃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비용 지원
 -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농업가치 중요성 인식 교육과 병행토록 유도
 - * 텃밭학교 확대설치계획 : ('18) 10개소 → ('20p) 15 → ('22p) 20
 - 학교텃밭 운영 전문가로 도시농업관리사 파견·지원
 - * 추진방향 : 수도권 일대 텃밭부지 임대료 지원 → 전국 확대 → 직접지원 확대
 - 텃밭교육 및 운영 관련 종합상담은 도시농업상담센터를 통해 지원

☞ (참고) 전국 초등학교 운영 현황(전체 6,001개교, '17년 기준)

지역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경기
학교수	601	308	225	247	153	146	117	1,227

나 복지형 도시농업서비스체계 구축

- 사회적 약자 대상 도시농업 활동 지원
 - 사회적 소외시설(아동보호시설, 노인복지시설 등) 대상 복지텃밭 및 일자리 연계지원으로 정서순화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

- 주말농장 참여 일반도시민과의 소통 및 교류를 병행하여 공동체의식 함양 등 외연확대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

* 복지텃밭 설치계획 : ('18) 20개 → ('19p) 50 → ('20p) 80 → ('22p) 120

○ **복지텃밭** 신규 운영모델 개발·보급

- 사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텃밭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표준형 모델 개발
- 개발된 표준모델의 전국적 전파 및 홍보를 통해 복지텃밭의 체계적 발전기반 마련

다 문화융합형 도시농업사업 발굴

□ **여가체험형 도시농업 연계사업 추진**

- 가족단위의 휴식·여가 활동공간으로 도심지 내 '도시농업공원' 확대, '도시숲' 연계 등 도시농업 활용 여가체험 공간 확대 추진
- 국토부 및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여가체험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추진

□ **문화·예술 융합형 도시농업 서비스 발굴**

- 민영·공영도시농장 주변공터에서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계절별 힐링 콘서트, 야외연극 등 **문화행사 개최**
- 특히 공영농장은 장애인, 다문화가정, 독거노인 등 사회배려 계층을 위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유도
- *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공영도시농장 분양시 일정부분 사회배려 계층 포함 의무화
- 도시농부와 요리사, 수공예가 등이 참여하는 **문화적 기능이 확대된 도시형 농부시장(farmer's market)모델** 개발 및 정착 유도
-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협조, 농부시장 개설을 위한 공간 제공, 인적자원 매칭 등 지원

3. 미래형 융복합모델 개발 및 보급

1 | 현황 및 문제점

- 미세먼지 등에 의한 대기오염, 수질저하 등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헬스케어식물에 대한 대국민 관심 급증
 - 초미세먼지 생성에 관여하는 휘발성화합물(VOC)의 식물 제거능력은 입증되었으나 입자성 미세먼지 제거 연구는 초기단계

- 수요자 맞춤형 도시농업 모델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미흡
 - 근린생활권, 공원형 텃밭 증가로 테마형 텃밭모델 개발 필요성 대두
 - 도시농업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지침 부재

- 정보통신, 사회경제, 환경생태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서비스 창출을 위한 미래도시농업 사업 콘텐츠 부재
 - 미래 4차산업 대응 융복합 신규모델 발굴 요구

2 | 세부 추진계획

【 추진 방향 】

- ◆ 계층·유형별 맞춤형 도시농업모델 개발 및 보급
- ◆ 환경·과학·정보통신 분야 활용 미래도시농업 기반기술 연구개발

가 4차산업 대응 미래도시농업 사업 발굴

- 4차산업기반 도시농업 플랫폼 개발('19~'21)
 - 인공지능형 도시농업 플랫폼 개발
 - 센싱키트→데이터분석(모니터링)→어플리케이션관리→커뮤니티(나눔)→VR기반 체험(교육)
 - 학교형, 주택활용형, 실내사무실형 등 도시농업 유형별 플랫폼 개발
- 정보통신기술(ICT) 활용 도시농업 콘텐츠 개발
 - 다양한 센싱기술을 활용한 식물관리 플랫폼 구축
 - IoT 기반 실내식물 관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최적환경 정보 제공('19~'21)
 - 도시공간 통합적용 ICT를 활용한 스마트 정원관리 기술 개발
 - * 추진목표 : ('18) 센싱 데이터 수집 → ('20) 프로그램 개발 → ('22) 모델구축
- 열섬 및 물관리 목적의 도시농업 공간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('20)
 - 수생정원, 옥상정원, 벽면녹화 등 확대 지원을 통한 에너지 효율개선
 -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대상 우수관 연결 빗물 집수 및 이용시설 설치 지원

나 도시농업 활용기술 보급·확산

- 도시농업 계층·유형별 맞춤형 기술 확산
 - 수요자 맞춤형 생활원예기술 보급 확산
 - 도시농업 관련 법인체 활용 관련 기반기술의 교육·홍보 확산
- 도농상생을 위한 도시농업 기술보급
 - 지자체별 도시농업 접목 농촌자원 발굴 공모 시범사업 추진
 - 단계별 육성을 통해 전문적 도시농업 영역 확대 유도
 - 도시농업 전문과정 상시 운영(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) 및 매뉴얼 제작·보급

다 도시녹화 표준모델 및 기반기술 개발

□ 한국형 도시텃밭 및 식재모델 개발

- 도시텃밭 대상자별(여가·취미·공동체·교육형) 맞춤형 모델 개발

* 개발계획 : ('18) 15 → ('20p) 20 → ('22p) 25

- 식물의 종류별, 생육특성 등을 고려한 활용기술 및 식재모델 개발

□ 도시 활력증진 및 재생을 위한 실내·외 정원 모델 개발

- 도심 내 연중 실용정원 조성 활용 매뉴얼 제작

- 스마트 그린오피스용 가구와 결합된 그린인테리어 모델 및 아이템 개발

- 바이오월, 그린파티션 등 그린인테리어 모델 오피스 구축 개발

- 도시재생 지역의 지속가능한 생태공간 설계기술 개발

- 저관리·고효율 식물 소재 및 친환경 녹화기술 패키지화 연구

□ 지속가능한 친환경·생태형 텃밭 관리기술 개발

- 지속가능한 텃밭 조성 및 방제기술 개발

- 텃밭의 다원적 가치분석을 통한 친환경·생태형 텃밭모델 및 방제기술 개발

- 도시농업 전용 농자재·채소재배기 개발·보급

- 소규모 농자재 및 가정용 채소재배기 등 친환경 식물재배시스템 개발

□ 도시농업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기술 개발

- 도시농작업자의 안전관리 매뉴얼 및 안전·편의 증진 장비 개발

- 농작업 부담 경감 편의장비 및 개인보호구 개발

- 맞춤형 도시농작업 안전관리 교육매체의 다양화 및 확산

- 안전보건 인식 및 실천 제고를 위한 교육, 홍보, 전시 등 지원

4.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 조성

1 현황 및 문제점

- (법·제도) 도시농업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 제기
 - 도시농업 정의가 확대*(17.9.22시행)됨에 따라 법조문 재정비 요구
 - 도시농업관리사 법적 자격요건 완화 필요
- (교육)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미흡
 - 도시농업 교육기관의 운영관리 및 성과평가체계 마련 요구
 -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확대 및 일자리 연계 지원 요구
- (정보) 도시농업 참여유도를 위한 다각화된 콘텐츠 제공 미흡
 - 도시농업의 영역확장에 따른 관련 콘텐츠 개발 확대 필요
 - 텃밭거래소, 사이버 교육시스템 등 IT분야 기반서비스 제공 요구
- (홍보) 체계적이고 다양한 홍보전략 및 수단 미흡

2 세부 추진계획

【 추진 방향 】

- ◆ 법·제도 정비 : 도시농업법 개정 및 도시농업관리사 제도 완화
- ◆ 교육 활성화 : 교육기관 확대 및 도시농업관리사 활용 극대화
- ◆ 정보화 서비스 확대 : 정보화 지원 강화 및 IT기반 확장
- ◆ 홍보 다양화 : 대규모 홍보행사 강화 및 참여형 홍보모델 확산

가 법·자격제도 정비

- 도심지역의 농지 활용 기준 마련
 - 도시농업 목적으로 농지 활용 시 현행법상 『국토계획법』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범주에 『농지법』에 따른 농지적용 기준을 추가
- 도시지역 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기준 완화 추진
 - 도시농업육성법 시행규칙상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, 곤충사육 또는 양봉의 운영관리기준을 완화
- 현행 법상 목적 및 책무조항에 규정된 '환경친화적인 농법'에 대한 기준 마련
 - 도시농업 대상 환경친화적 농법 기준 검토 후 하위법령에 신설
-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요건(국가기술자격+80시간 전문과정) 완화
 - (기술자격) 도시농업관리사 취득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 확대
 - (전문과정) 교육수료기준 마련, 교육과목 개편 등
- 전문인력 양성기관 사후관리 방안 마련
 -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 이수인력 허위배출 방지방안 마련
 - 인력 허위배출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벌칙조항, 양벌규정 등 신설
 - 국가·지자체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주기적 점검의무 부여
 - 연 1회 의무점검 실시, 부적합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 신설
-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례개정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
 - 도시농업 조례개정, 업무추진 등에 활용가능한 업무편람 및 지침서 제공

나 도시농업 교육 활성화

□ 도시농업 교육기관 확대

-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비 등 지원* 확대

* 예산사업 확대, 종합상담센터를 통한 컨설팅 지원, 지자체와의 협력 유도 등

< 도시농업 교육인프라 확대 계획 >

☞ 도시농업지원센터 : ('17) 24개소 → ('18p) 28 → ('20p) 35 → ('22p) 45

☞ 전문인력양성기관 : ('17) 33개소 → ('18p) 40 → ('20p) 50 → ('22p) 60

* 교육기관 지원계획(국비지원) : ('18) 6개소 → ('20p) 10 → ('22p) 15

□ 도시농업관리사 전문역량강화 교육 지원 및 일자리 연계

- 전국도시농업관리사 협회 구성 및 운영* 체계 마련(19)

-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정기적인 재보수 교육 실시

*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으로 협회 운영 및 교육일정 관리

- 일자리 창출 연계를 위한 민·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

- 도시농업관리사 취업현황 및 구인·구직 중개 시스템 구축

- 시스템 활용 도시농업관리사와 수요기관과의 연계방안 마련

다 정보화 서비스 확대

-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(“모두가 도시농부”, <http://www.modunong.or.kr>)
고도화 및 이용활성화

- 도시농업 관련 종합DB 구축 및 운영

- 유형별 도시농업, 교육, 정보교류, 민간단체 현황 등 DB화 및 현행화

- 「도시농업관리사」 자격관리시스템 고도화
 - 자격요건 검증 및 자격증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위변조시스템 구축
 -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신청접수 및 발급체계 전산화
- 도시민의 텃밭거래를 위한 온라인 텃밭거래소 구축
 - 지자체 또는 민간운영단체가 직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
- 「모두가 도시농부」 소셜미디어 운영 관리를 통한 이용활성화
 - 중장기적 운영이 가능한 소셜미디어 Master Plan 및 개편방안 수립
- 사이버기반의 도시농업 교육·관리시스템 개발 및 활용
 - 사이버 기반의 도시농업 교육과정 개발·보급
 - 확장된 도시농업의 정의를 반영한 분야별 게임콘텐츠 개발 및 제공
 - ‘도시농업게임’ 어플의 개발 및 운영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
 - 게임 인터페이스, 어플운영주체, 어플관리체계 등 마련·실행

라	홍보채널 다양화
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- 도시농업 10주년 백서발간 추진(‘21~’22)
 - 도시농업법 시행(‘12)이후 10년간의 도시농업 발전 및 전망 수록
 - 지자체, 도시농업지원센터, 전문인력 양성기관, 협회, 단체 등에 배포
- 도시농업박람회의 질적·양적 성장을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
 - 농업인의 박람회 참여 유도로 도시농업의 가치 공유
 - 박람회 시설물의 지속적 활용 추진을 통한 도시농업 홍보
- 도시농업의 날(매년 4.11) 행사 규모 및 콘텐츠 확대
 - 타 행사와의 연계 추진을 통한 참여인원 확대
 - 교육부·복지부 등 타 부처 행사와의 연계 추진을 통한 흥미 유발

V

단계별 추진계획

추진과제	추진주체	추진시기*	
		1단계	2단계
1. 네트워크 강화 및 교류 활성화			
· 도시농업상담센터 설치·운영	농식품부·농정원		
· 도·농간 교류활동 강화	농식품부·지자체·민간단체 ·농업인단체		
· 민·관 협의체 구성·운영	농식품부		
2. 영역확장형 신서비스 창출			
· 미래세대 텃밭교육 체계화	농식품부·지자체		
· 복지형 도시농업서비스체계 구축	농식품부·지자체		
· 문화융합형 도시농업사업 발굴	농식품부·지자체		
3. 미래형 융복합모델 개발 및 보급			
· 4차산업 대응 미래도시농업사업 발굴	농식품부·농촌진흥청		
· 도시농업 활용기술 보급·확산	농촌진흥청·지자체		
· 도시녹화 표준모델 및 기반기술 개발	농촌진흥청		
4.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 조성			
· 법·자격제도 정비	농식품부		
· 도시농업 교육 활성화	농식품부·농정원·민간단체		
· 정보화 서비스 확대	농식품부·농정원		
· 홍보채널 다양화	농식품부·농정원		

* 1단계('18~'20년, 성장기), 2단계('21~'22년, 도약기)

VI

중장기 투자계획(안)

(단위 : 억원)

부 문	추진과제	년차별 투자계획(안)*					
		계	'18	'19(안)	'20(안)	'21(안)	'22(안)
합 계		289	36	49	57	65	82
1. 네트워크 강화 및 교류활성화	1-1. 도시농업상담센터 설치·운영	5	1	1	1	1	1
	1-2. 도·농간 교류활동 강화	19	1	3	5	5	5
	1-3. 민·관 협의체 구성·운영	비예산	-	-	-	-	-
	소 계	24	2	4	6	6	6
2. 영역확장형 신서비스 창출	2-1. 미래세대 텃밭교육 체계화	9	1	2	2	2	2
	2-2. 복지형 도시농업비스체계 구축	15	1	2	3	4	5
	2-3. 문화융합형 도시농업사업 발굴	17	1	1	3	5	7
	소 계	41	3	5	8	11	14
3. 미래형 융·복합 모델개발 및 보급	3-1. 4차산업 대응 미래도시농업사업 발굴	17	1	1	3	5	7
	3-2. 도시농업 활용기술 보급·확산	35	5	6	7	8	9
	3-3. 도시녹화 표준모델 및 기반기술 개발	105	15	20	20	20	30
	소 계	157	21	27	30	33	46
4.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 조성	4-1. 법·자격제도 정비	비예산	-	-	-	-	-
	4-2. 도시농업 교육 활성화	29	3	5	5	8	8
	4-3. 정보화 서비스 확대	21	4	5	5	4	3
	4-4. 홍보채널 다양화	17	3	3	3	3	5
	소 계	67	10	13	13	15	16

*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한 예산편성과정에 변경될 수 있음

VII 계획 추진 및 평가체계

1 계획 추진

- 과제 담당기관은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자체 시행계획 수립·시행
 - 주요 과제 시행을 위한 단계별 세부계획 수립 시행 및 정책지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 확보
- 지방자치단체는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자체 시행계획 수립·시행
 - 도시농업육성법 제6조에 의거, 자치단체에서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시행
 - 시·도에서는 자체 시행계획 수립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

2 평가 체계

- 매년 종합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·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
 - 과제별 추진실적과 당해 연도 추진계획을 점검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계획 수정 보완
 -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, 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

미 국

- (일반개요) 대도시 중심 또는 주변지역에서 농산물 또는 기타 제품의 생산, 유통 및 마케팅을 포함하는 개념
 - 연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, 각 기초자치단체(County) 단위에서 도시계획에 포함시켜 자체 추진
- (통계현황) 연방정부 단위 통계는 없으며, ACGA(미국공동체텃밭협회, American Community Garden Association)가 2013년에 발표
 - 커뮤니티 가든(Community Garden)*형태로 운영되며, 마을텃밭 43.7%, 교회텃밭 20.3%, 공공주택텃밭 9.7% 순으로 구성
 - * 도시민 여가활동을 위해 자가소비용 채소·화훼를 공동체 단위로 재배하는 정원
- (주요사례) 연방정부(농무부) 차원의 기술지도 등 교육지원이 있으며 민간단위에서 자발적으로 활성화되어 하나의 트렌드화
 - 정부지원 : 토양·용수 등 자원관리, "도시농업 TOOL KIT" 제작·배부
 - 민간활성화 : 뉴욕 "그린 섬(Green Thumb), 브루클린 옥상농장, 시애틀 "어린이 교육텃밭", 시카고 "공장형 도시농업(The Plant)" 등

일 본

- (법적정의) 일반적으로 "시가지·그 주변지역(도시적 지역)에서 이루어지는 농업"으로 정의하나, 농지세제면에서 도시계획법상 "시가화 구역"에서 행해지는 농업을 지칭하기도 함(생산개념 포함)
 - 영국 얼로트먼트의 영향으로 1924년 시민농원*이 최초로 도입되어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점차 확장해 나가고 있음

* 도시민들의 여가활동으로서 자가소비, 학습, 여가, 도·농교류 등을 목적으로 소면적의 농지를 활용해 채소나 꽃을 기르는 농원

- (법·제도 현황) 시민농원정비촉진법(1990), 도시농업 진흥기본법(2015) 등 관련 대다수 영역에서 법제화가 이루어짐
 - 시민농업 정비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, 도시농업의 개념* 정의, 도시농업 진흥을 위한 국가·지자체의 책무 등
 - '17년도 도시농업 예산은 약 1억 6천만엔(약 16억원)이며,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, 연구·조사 등을 위해 활용
- (통계현황) 주로 도시농업진흥법에 따른 “도시적 지역”에서의 도시농업과 시민농업 현황이 통계치로 산출됨

< 일본 도시농업과 일반농업 비교 현황 >

구분	도시농업	일반농업	도시농업비율
농가수	636,000호	2,528,000호	25%
경지면적	1,243,000ha	4,593,000ha	27%

* 출처 : 일본 농림수산성(2010 세계 농림업센서스, 2010년 경지 및 작부면적 통계)

- 연간 매출액 100만엔 미만 농가가 전체의 60%를 차지하며, 주요 생산 작목으로는 벼, 노지야채 및 시설야채 등이 있음
- 시민농원은 1975년 농림수산성이 “레크리에이션 농업”으로 인정한 이래 지속 증가하였으며, 도시지역에 전체 농원의 80%가 위치

< 일본 시민농원 현황 >

(단위 : 개소, %)

구분	농원수		구획수		면적(ha)	
	개소	%	개소	%	면적	%
도시적지역	3,366	79.7	155,550	81.9	877.4	63.6
평지농업지역	276	6.5	13,383	7.0	200.8	14.5
중간농업	401	9.5	14,542	7.7	196.1	14.2
산간농업	180	4.3	6,420	3.4	106.3	7.7
전 국	4,223	100	189,895	100	1,380.6	100

영국

- (일반현황) 도시빈민들의 생존을 위한 경작지 마련 및 도시민들의 여가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해 장려 추세
 - 지방정부·얼로트먼트 협회가 대상지를 할당채원지(Allotments)로 구획하여 운영자에게 임차하는 방식(얼로트먼트법, 1950)
 - 임차료는 장애인 무료, 기간제 근로자 및 실업자 등은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방정부별 징수기준 다양

< 영국의 도시농업 현황 >

Allotment수	Plot(구획지) 수	전체면적	임차료	분양 대기자 수
3,558개소	152,432개	2,300ha	평균 15파운드 (한화 3만원)	78,000명 (Plot당 0.52명)

* 출처 : The National Allotment Society 설문조사(2013)

- (법·제도 현황) Allotments Act(1950), Small Holdings and Allotments Act(1980 최종개정)
 - 지방정부가 Allotment 처분 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법적의무 부여, 지방정부의 Allotment 장려를 위한 재량권 부여 등

러시아

- (일반현황) 수치화된 현황이나 법·제도 등은 확인되지 않음
- (참고사례) 도시외곽 지역에 “다차(Dacha)”라고 하는 별장과 텃밭이 포함된 주말농원을 통해 도시농업에 참여
 - 러시아 전 가구의 1/4가 다차를 소유*하고 있으며, 다차의 총 면적은 약 12천km²*가량으로 분포(모스크바 면적 2.5천km²의 약 5배)

* 출처 : 농업센서스(2006)